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5. 29 선고 2023가단327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5. 망 F의 상속인 G

6. 망 F의 상속인 H

7. 망 F의 상속인 I

변 론 종 결 2024. 5. 1.

판 결 선 고 2024. 5. 2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앞으로 마쳤다.

나. J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등기되지 않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J가 2014. 5. 1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F, 피고 C, D, K, E가 존재하였고, F는 2021. 9. 9.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G와 자녀인 피고 H, I이 존재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상속을 통하여 피고 C, D, K, E가 각 1/5, 피고 G이 3/35, 피고 H, I이 각 2/35의 지분을 소유하여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J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며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이 J의 사망 이후부터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자로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의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수현

별지